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2월 1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07년 2월 1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 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위탁 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으로 개정(안 제5조 4항)
- 기금의 사용 등 - 기금중 일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추가(안 제9조)
-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융자심의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심의 추가(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상공인”이라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 46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로, 동항 제9호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 한법률 제49 ”를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제5조 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5호 중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상공인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자 중 중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 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

제12조 제1항중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 후”를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를 거친 후”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제12조에 의한 기금용자대상자를 심의·결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 출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2. 기금 용자 대상자 결정

제13조 제4항 제3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회장”으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이하생략)</p> <p>제2조(정의) 1~2<생략> 3.“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p> <p>4. <생략></p> <p>5.“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생략)</p> <p>6.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생략)</p>	<p>제1조(목적)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1~2<현행과 같음> 3.“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행과 같음)</p> <p>6.“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8.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u>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p>	<p>8.<u>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u>.....</p>
<p>9. ..<u>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u>.....</p>	<p>9. .. <u>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49조</u></p>
<p>제3조(기금의 설치)①<생략> ②기금은 <u>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u>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u>의</p>
<p>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등)①<생략> ②<생략> 1.<생략> 2.<u>시장 재개발 사업 지원자금</u> 3.~ 5.<생략> <신설> ③<생략> ④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중소기업진흥공단</u>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삭제 3.~ 5.<현행과 같음> 6. <u>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u> ③<현행과 같음> ④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금융기관</u>에 위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①<생략></p> <p>1.~4.<생략></p> <p>5. <u>시장재개발사업자</u></p> <p>6.~8.<생략></p> <p>②<생략></p> <p><신설></p> <p>제9조(기금의 사용등)①<생략></p> <p>②기금중 <u>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u>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u>사용</u> 할 수 있다.</p> <p>1. <u>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 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u></p> <p>2. <u>임시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u></p> <p>③<생략></p> <p>④<신설></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①<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u></p> <p>6.~8<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u>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9조(기금의 사용등)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④기금중 <u>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u>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u>사용</u> 할 수 있다.</p> <p>1.<u>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u></p> <p>2.<u>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 사업</u></p>

현행	개정안
<p>제12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후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하는 경우 용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2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 검토를.....</p>
<p>제13조(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2조의 의한 기금용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p> <p>1.<신설></p> <p>2.<신설></p> <p>④제1호~제2호<생략></p> <p>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p> <p>4. ~ 6.<생략></p> <p>7.도 기업지원과장</p>	<p>제13조(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p> <p>1.기금 출연, 기금 운용계획 수립, 결산 심의</p> <p>2.기금 용자 대상자 결정</p> <p>④제1호~제2호<현행과 같음></p> <p>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p> <p>4. ~ 6.<현행과 같음></p> <p>7.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p>

관계법령 발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